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**소방용 배관 보온재의 난연성능 적용 관련 질의 회신 알림**

1.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-3920호(2022.8.24.)와 관련됩니다.

2. 화재안전기준상 규정된 "소방용 배관보온재의 난연재료 성능"과 관련 질의에 답변한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질의내용

- 「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」 제6조제10항에서 소방용 배관 동결방지조치로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**난연재료 성능 이상인 것으로** 하도록 하고 있음 (2015.1.23.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 9개 고시 개정)
- 2016년 지침에서 보온재의 난연성능 확보는 재료별 KS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일정성능(예시: 산소지수 시험 ≥ 28 , 수평연소성 시험 HF-1)을 확인하도록 하였음 (소방제도과-5493, 2016.10.17.)
- 2021.2.19. 건설기준코드 보온공사 표준시방서(KCS 31 20 05)개정에 따라 **보온재료의 화재안전성능**이 상기 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**변경**되었음
 - ① 가스 유해성 시험(KS F 2271): 흰 쥐 평균 행동 정지 시간 9분 이상
 - ② 수평연소성 측정(KS M ISO 9772): 등급 HF-1
 - ③ 산소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(KS M ISO 4589-2): 산소지수 ≥ 28
 - ④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(KS F 2844): CFE(소화 시 임계 열류량) ≥ 10

※ ②와 ④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.
- 소방용 배관보온재의 난연재료 성능은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?
(갑설) 2016년 소방제도과 지침
(을설) 2021년 개정된 건설기준코드 보온공사 표준시방서

○ 답변내용

- 소방용 배관보온재의 난연재료 성능은 2021년 개정된 건설기준코드 보온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르도록 합니다.(을설)

- 2016년 적용 지침에서도 소방용 배관보온재료의 난연재료 성능은 재료별 KS 시험방법을 따르도록 하면서 해당 내용을 예시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건설기준이 개정되었다면 변경된 기준에 따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. 끝.

경 기 도 지 사



수신자 소방서(24개 재난예방과)

소방위 **황대진** 화재예방팀장 **홍건표** 재난예방과장 **임정호** 전결 2022. 8. 25.
협조자

시행 재난예방과-13885 (2022. 8. 25.) 접수 재난예방과-7556 (2022. 8. 26.)
우 1655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86, 경기도소방재난본부 / <https://119.gg.go.kr>
(권선동)

전화번호 031-230-2862 팩스번호 031-280-8501 / fireboy@gg.go.kr / 대국민 공개

행복한 일자리 경기도가 만들어 갑니다